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홍보전산과)

의안번호	제108호
제 출 자	정해숙 의원 외 8명 (2023. 03. 17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우리구의 여러 공식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·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홈페이지 폐기 조항을 조례에 추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홈페이지 폐기(안 제3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자정부법」

나. 협조부서 : 홍보전산과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
다. 입법예고 : 2023. 3. 17. ~ 2023. 3. 22.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여러 공식 홈페이지 중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·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홈페이지에 대한 폐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안 제37조(홈페이지의 폐기)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집행부에서는 이미 장애인, 어르신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고 있으며, 성북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별도 운영되었으나 구 홈페이지로 이관하여 폐기 된 바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의 운영·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.

집행부의 조례개정안 수정 의견서

1. [개정안] 제37조제2항¹⁾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.

“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2항”을 “제24조”로, “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”를 “등의”로 한다.

(수정사유)

-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2항의 경우, 정보시스템의 안전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·수행에 관한 법령으로, 기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에 대한 내용임. 홈페이지 폐기에 관한 법령으로는,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처리·제공·이용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인, 제24조²⁾가 적합하다고 판단됨.
- 또한 “콘텐츠 저작권의 외부 유출 방지”는 적합하지 않은 문구로 “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”를 “개인정보 등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1) 제37조(홈페이지의 폐기)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2항 → 제24조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→ 등의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24조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)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2. [개정안] 제38조³⁾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.

“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”을 “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”으로,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정부법」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(수정사유)

-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가 삭제되고, 소관 법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관련 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3) 제37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~~및 「전자정부법」~~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109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7조제2항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2항”을 “제24조”로, “콘텐츠
저작권 등 정보의”를 “등의”로 한다.

제38조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”을 “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
제12조의2제2항”으로,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정부법」”
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홈페이지의 폐기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7조(홈페이지의 폐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제24조----- ----- ----- 동의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8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	제38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----- ----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----- ----- 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.